

## 대학안전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대학”라 한다)의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을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본교의 자산을 유지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본교를 출입하는 방문객과 모든 시설 및 부대 장비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안전관리”라 함은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불안정한 상태나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전반적인 조치나 대책을 말한다.

**제4조(안전업무 우선)** 대학의 각 학부 및 행정부서의 장은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제2장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 ① 대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부총장, 각 처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 안전관리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2. 학교 교육·연구 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방화관리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교내 연구실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5. 교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대학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 책임자는 부총장이 되고, 상황총괄반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가 되며, 상황총괄반의 팀장은 안전관리자가 된다.

**제9조(각 실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각 대학(학부) 및 각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관장하고 있는 건물의 실별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실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정·부로 지정한다.

### 제3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제10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시 주관부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의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적용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